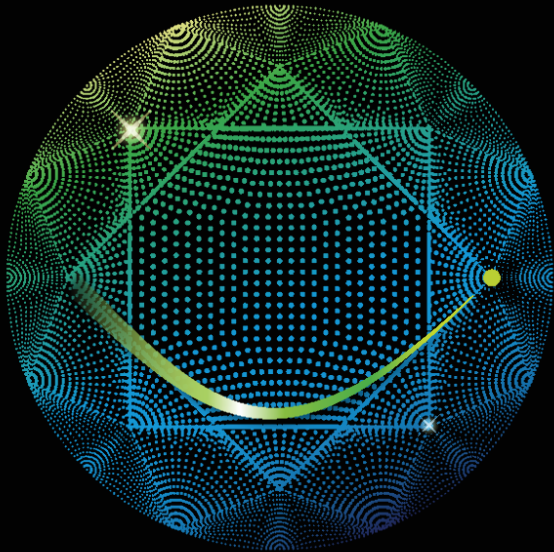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내용 :

01. 조세행정

- 종속 지점에 대한 개인소득세 ("PIT") 신고

02. 개인소득세 ("PIT")

- Covid-19로 인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PIT
- SARS-CoV-2 검사 비용에 대한 PIT
- Covid-19 예방 관련 비용에 대한 PIT (2020년6월1일 제44403/CT-TTHT호 OL 대체)
- PIT 정책

03. 법인소득세

- 2015년 이전의 지원산업 ("SI") 제품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비

04. 부가가치세 ("VAT")

-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 부채 거래 활동에 대한 인보이스

05.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FCWT
- 베트남에 교육활동에 대한 FCWT

06. 출입국

- Covid-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의류 집중 격리 기간 단축

07. 무역 및 관세

- 수출제조를 위한 내국 수입 원자재에 대한 면세 여부
- 수출제조를 위한 수입품의 폐기
- EPE에 가공 위탁되는 국내 수입품에 대한 관세
- 내국 수출입 물품은 같은 세관에서 수출입 절차를 수행 가능하다.

조세행정



지침 문서

중속 지점에 대한 개인소득세 ("PIT") 신고

회사가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공장인 중속 지점이 있는 경우 본사에서 PIT를 신고한다.

재무부는 조세행정법 (2019) 및 제126/ND-CP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수행을 지침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기전에 회사가 2021년02월26일 제1938/BTC-TCT호 OL의 지침에 따라 2021과세연도의 PIT을 신고하도록 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1년 7월 19일 제 2034/CTBNI-K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Covid-19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PIT

회사가 성급 인민위원회,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ovid-19 예방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한 생산 활동을 위해 회사에서 머무르고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식품, 숙박, 현금 수당, Covid-19 정기 테스트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PIT처리는 아래와 같다:

- 상기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상 근로자의 이름이 명확히 명시되면 해당비용이 근로자의 PIT과세소득에 포함된다.
- 상기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상 근로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종업원에게 지급되면 해당비용이 근로자의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Bac Ninh 세무국의 2021년 6월 29일 제1883/CTBNI-TTHT호 OL)

SARS-CoV-2 검사비용에 대한 PIT

직원에 대한 SARS-CoV-2 검사비용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간주되며 소득세 계산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1년 7월 5일 제1609/CTHPH-TTHT호 OL)

Covid-19 예방 관련 비용에 대한 PIT (2020년 6월 1일 제44403/CT-TTHT호 OL 대체)

소득세: Covid-19 기간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마스크, 손 소독제, 일부 보호 물품 및 test 관련 비용은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하노이 시 세무국의 2020년 7월 16일 제66297/CT-TTHT호 OL)

PIT 정책

회사가 근로자에게 VND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는 VND로 지급된 소득에 대한 PIT를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총국의 2021년 7월 19일 제2654/TCT-DNNCN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2015년 이전의 지원산업 ("SI") 제품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된 투자
프로젝트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 SI 제품 생산
- 제71/2014/QH13호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
- (SI 인센티브 제외) 기타조건으로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음

SI 인센티브 확인서를 취득한 후
회사는 정부의 2021년 6월 4일
제57/2021/ND-CP호 시행령에 따라
과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SI 제품생산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CIT")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7월 13일
제27052/CTHN-TTHT호 OL)*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비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건설, 운영 및 설비, 기본 인테리어
가구등의 비용은 고정자산이 형성
조건을 충족하면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CIT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비용이 시행규칙 No. 96/2015/TT-
BTC의 4조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7월 8일
제11308/CTHN-TTHT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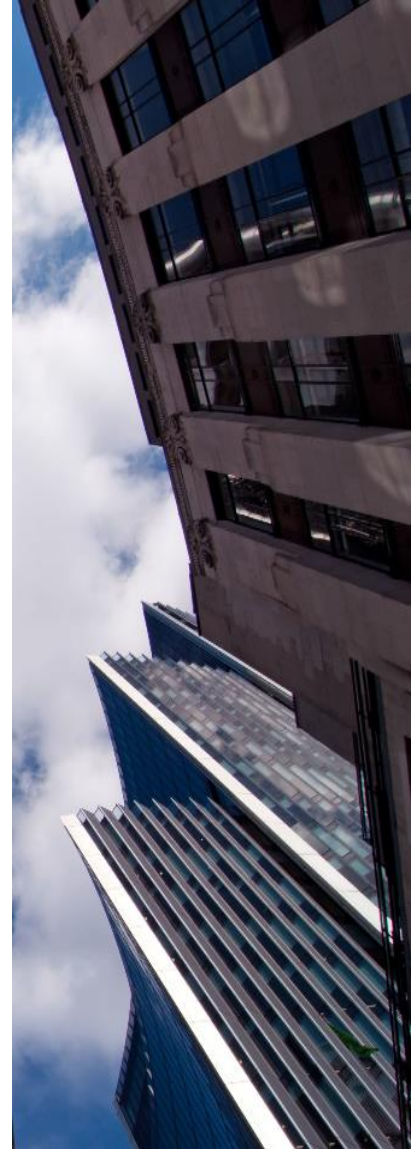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부가가치세 ("VAT")



지침 문서

본사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2020년 12월 또는 2020년 4분기의
과세 기간부터: 본사를 관리하는
세무국은 회사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및 환급 서류를 접수한다.

2021년 1월 또는 2021년 1분기의 과세
기간 부터 회사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방의 현지 세무국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및 환급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7월
23일 제11926/CTBDU-TTHT호 OL)*

부채 거래활동에 대한 인보이스

고객에 대한 부채 거래활동은 VAT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VAT
인보이스상 결제액으로 판매 가격만
기재하고 세율 및 VAT금액의 행은 줄을
그어 지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7월 22일
제28463/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시장에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병해충이 없도록 검사 및 처리 서비스를 베트남에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파견한 경우 베트남 FCWT이 부과된다.

베트남 회사는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VAT 5% 및 CIT 5%의 세율로 FCWT를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Long An세무국의 2021년 3월 5일 제/656/CT-TTHT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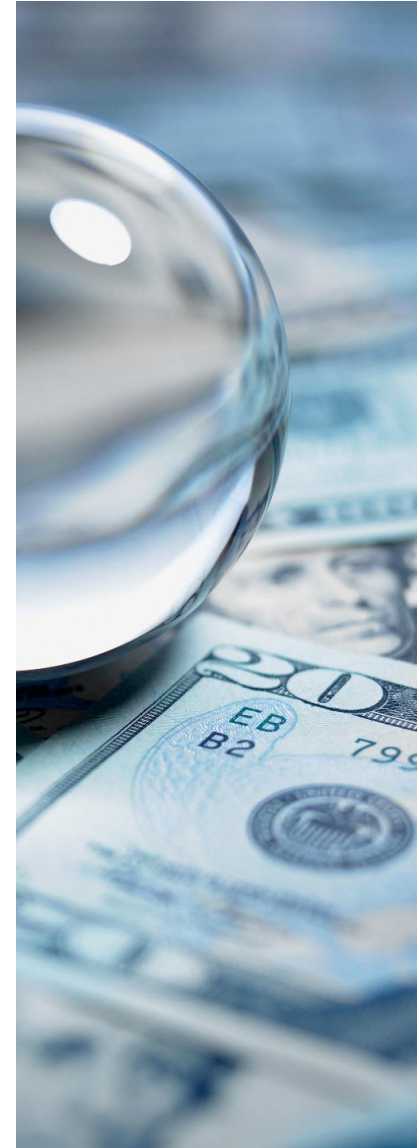
베트남에서 교육 활동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 A는 베트남 회사에게 베트남에서 교육과정을 위한 로고, 브랜드, 교재 및 교육 방식을 양도합니다. 외국인계약자A에 의해 지정된 외국인계약자B가 베트남 회사에게 교육안내 자료, 마케팅 자료, 관련 자료 번역, 계획 관리, 교육 결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 계약자 A 및 B를 대신하여 FCWT을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으로 :
- 외국인계약자A 가 로고 사용권, 브랜드, 교재 및 교육 방식을 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 및 외국인계약자 B가 교육 안내 자료 제공으로 얻은 소득은 기술이전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활동 또는 지적소유권법령에 따라 지적 재산 이전 활동으로 간주되어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로열티 소득에 대한 CIT 10%가 부과된다.

- 기술이전 활동 또는 지적 재산 이전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VAT 5% 및 CIT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인계약자 B가 나머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VAT 5% 및 CIT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박닌 세무국의 2021년 7월 14일 제/1992/CTBNI-TTHT호 OL)



Contac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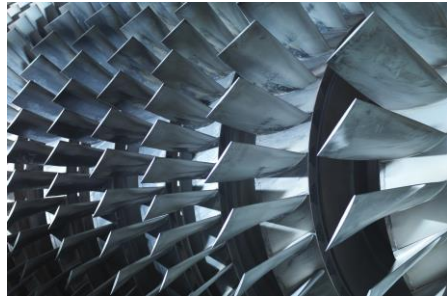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출입국



지침 문서

Covid-19 백신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의료 집중 격리 기간 단축

베트남 보건부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충분히 받았거나 감염에서 완전히 회복된 개인이 베트남 입국시 의료 집중 격리 기간을 아래와 같이 지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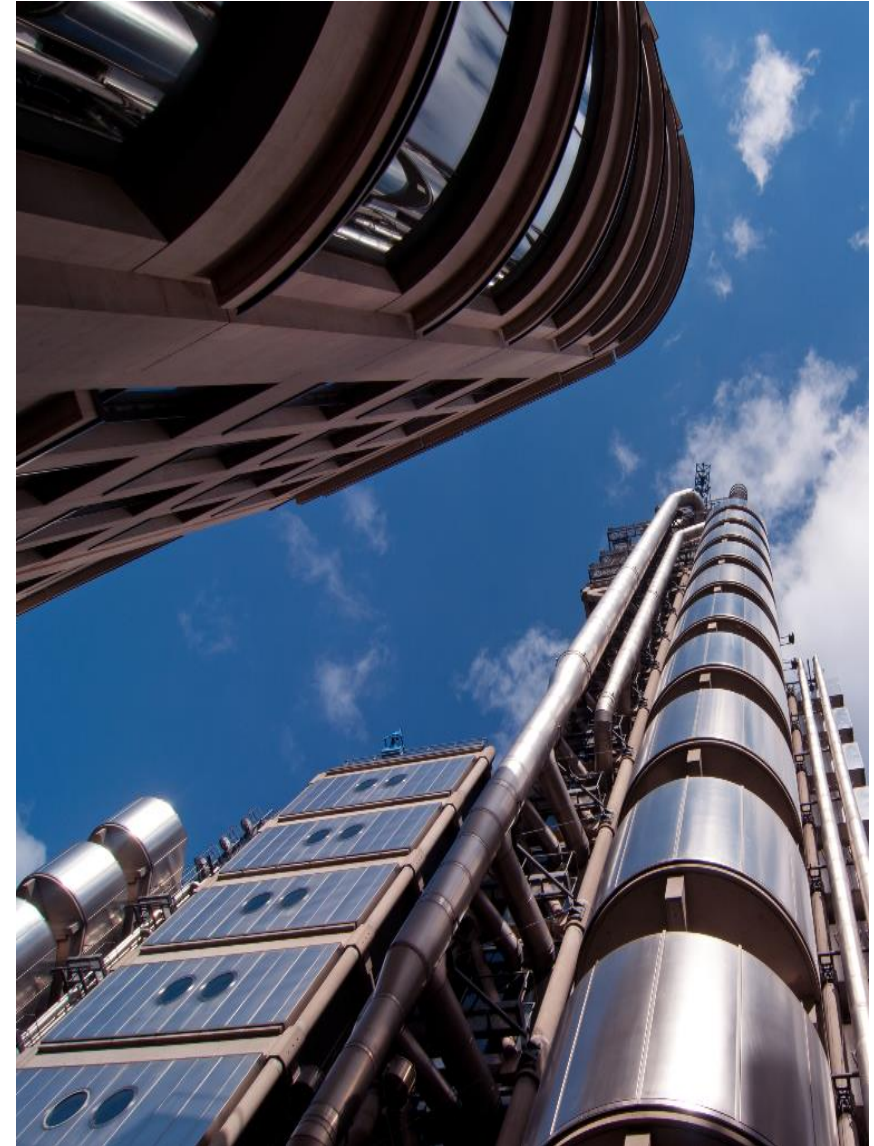
1. 다음 조건을 충족 할 경우, 베트남 입국자는 의료 집중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그 다음 7일 동안 자체 격리 가능하다 (단, 14일 이내 입국자 및 Covid-19 예방관리 국가운영위원회 및 보건부의 다른 규정에 따라 격리 경우를 제외):

-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SARS-CoV-2에 대한 음성 검사 결과(RT-PCR/RT-LAMP 방법)가 있고 검사를 수행하는 국가 유관기관에서 인증을 받음;
- Covid-19 백신 접종 횟수(입국 시점 기준으로 최소 14일 이상 12개월 이내의 마지막 접종)를 다 받았고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함;

- 또는 과거에는 SARS-CoV-2 확진자였으나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일 검체의 RT-PCR 방법에 의한 SAR-COV-2 양성 결과 인증서) 치료 국가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 회복 증명서 또는 질병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유사한 문서가 있어야 함.

2. 입국일로부터 첫날 및 7일째 SARS-CoV-2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날은 빠른 검사 또는 PT-PCR 검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7일째는 PT-PCR방법으로 검사해야 한다).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올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건부의 2021년 8월 4일 제6288/BYT-M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제조수출을 위한 내국 수입 원자재에 대한 면세 여부

관세총국은 경우에 따라 제조수출용 내국 수입 제품이 수입세를 면제 받거나 납부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하였다.

수출가공기업("EPE")와의 계약에 따라 내수기업이 구매하는 물품 또는 외국인계약자로부터 지정된 EPE로부터 내국 수입되는 물품은 E31(제조수출용 수입)로 수입 신고서를 등록하고 수입관세, 수입 VAT이 면제된다.

내수기업이 외국인계약자가 지정한 다른 내수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국내 소비 목적 수입(A11) 또는 사업 및 제조 목적 수입(A12)으로 내국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세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제품 생산 후 수출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1년 7월 12일
제3487/TCHQ-TXNK호 OL)

수출제조를 위한 수입품의 폐기

관세총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규는 해당 법규의 발효일로부터 적용된다. 법규는 해당 법규가 시행되는 시점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된다. 법규의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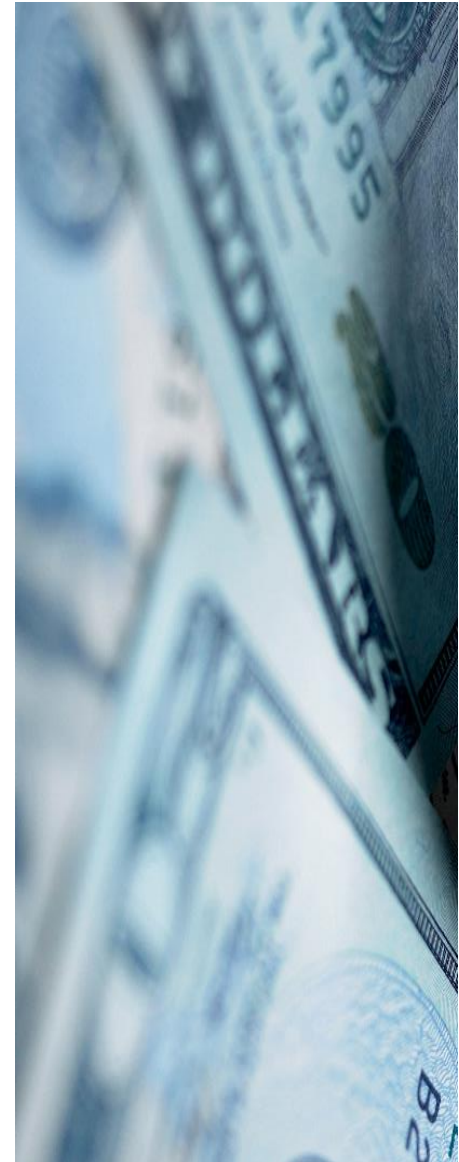
상기 규정에 따라 기업이 2021년 4월 25일 이전에 수출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폐기가 허용되고 실제로 2021년 4월 25일 이후 폐기했으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총국의 2021년 7월 14일
제3542/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EPE에 가공 위탁되는 국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내수 기업은 제조 수출 또는 임가공 수출을 위해 물품을 수입한 다음 수입된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으로 제조한 반제품을 EPE에 가공 위탁할 경우 이후 내수 시장으로 수입되는 가공 제품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 기업은 수입 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수입 과세 가격은 제 39/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18조 3항에 따라 임가공 수수료, 가공 과정에서 EPE가 제공한 원자재 가격 및 조정 금액 (있는 경우)을 포함한다. 수입 과세 가격은 내수 기업이 EPE에 발송한 가공용 원자재 및 공급품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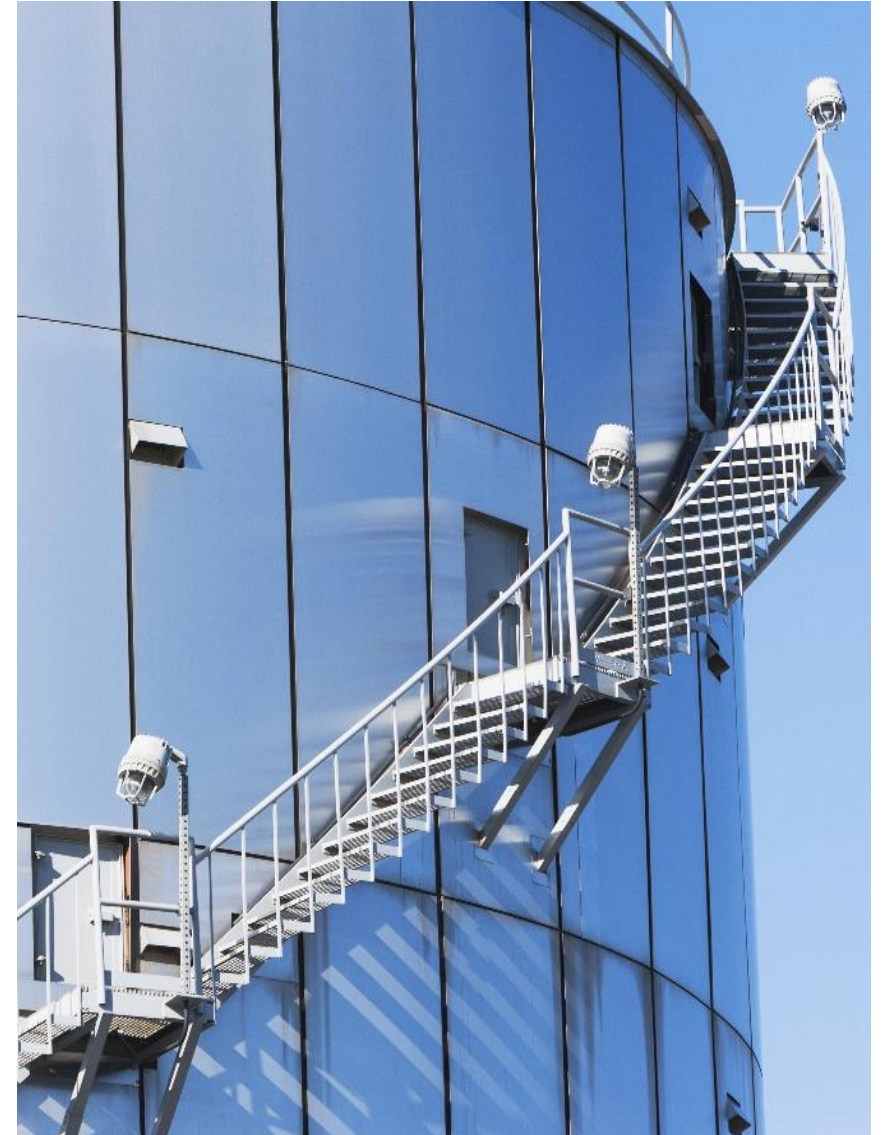
(관세 총국의 2021년 7월 19일 제3634/TCHQ-TXNK호 OL)

내국 수출입 물품은 같은 세관에서 수출입 절차를 수행 가능하다.

제38/2015/TT-BTC호 시행 규칙 제8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 수출입 절차는 수출입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세관지국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내국 수출 절차를 수행한 세관지국에서 내국 수입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Ho Chi Minh 세관당국의 2021년 8월 4일 제2021/HQTPHCM-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